# 사이다페이/콜라서비스 대리점 계약서

계약일	2019
상	㈜쏘다
생	
관할지역	

# 사이다페이/콜라서비스 대리점 계약서

(주)쏘다(이하 "상")와 (이하 "생")은/는 "상"이 개발 및 서비스하는 사이다페이, 콜라서비스 등 주요 서비스(이하 "서비스")의 포괄적 영업을 위한 대리점 개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고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다.

- 다음 -

#### 제1조 [계약목적]

본 계약은 "상"이 공급하고 "생"이 영업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리점 의무사항 및 거래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서비스 가맹 고객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추구하고, 또한 "상"과 "생"이 성실히 준수하여 상호 공동의 발전과 번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# 제2조 [계약범위]

- 1. 본 계약은 "상"의 상표와 영업표지 및 서비스를 이용하여 "생"이 리셀러를 모집하거나 가맹점을 대상으로 리셀링하기 위함이다.
- 2. 본 계약과 관련하여 "상"의 유·무형의 영업이미지, 상호, 상표, 서비스표의 사용은 소유권을 포함하지 아니한 사용권으로, "생"의 사용기한은 계약이 유효한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, 계약 유효기간 이후는 사용 권리를 상실한다. 단, "생"은 검색사이트 내에서 서비스 상호와 연관된 키워드 광고를 진행할 수 없다.
- 3. "생"은 계약기간 동안 서비스 관련 리셀러 및 가맹점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.
- 4. 본 계약의 범위에는 본 계약서 및 "상"과 "생"이 합의한 일체의 서류와, https://my.ciderpay.com 등을 통하여 "상"이 "생"에게 안내하는 일련의 모든 운영안 등이 포함된다.
- 5. "상"은 변경되는 사항이나 새로운 사항을 "생"에게 충실히 알려야 되며, "생"은 이 모든 사항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여야 하고, "생"이 전체 또는 일부를 이해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.

#### 제3조 [대리점 가입조건, 서비스 공급조건, 수익모델]

별첨 부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## 제4조 ["생"의 권리]

- 1. "생"의 영업지역은 전국으로 한다.
- 2. "생"은 "상"과 계약된 기간 내 본점의 상호, 상표, 영업표지, 서비스표권의 사용권리를 가진다.
- 3. "상"은 "생" 및 예하 리셀러를 통해 모집된 가맹점의 매출에 대한 수수료를 "생"에게 지급해야 하며, "생"은 예하 리셀러에게 재정산을 할 권리를 갖는다.
- 4. "생"은 리셀러별 수수료 마진을 책정할 수 있다.
- 5. "생"은 리셀러별 가맹점 등록비를 책정할 수 있다.

#### 제5조 ["생"의 의무사항]

- 1. "생"은 본 계약서, 관계법령 및 "상"의 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2. "생"은 서비스 가맹점의 유치영업과 서비스 신청, 서비스 사용법 교육업무를 책임진다. (예하리셀러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감독 의무 포함)
- 3. "생"은 서비스 가맹점이 원활하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용방법과 월사용요금 및 온라인결제 정산에 대한 안내를 책임진다.
- 4. "생"은 자신이 영업한 가맹점이 본 계약의 부속합의에서 정하는 가맹비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해당 가맹비를 직접 수금하여야 한다.
- 5. "생"은 현장 방문을 요하는 가맹점의 유지보수 요청 등에 대해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지원하여야 한다.
- 6. "생"은 예하 리셀러를 둘 경우 해당 리셀러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"상"으로부터 정산 받은 수수료 중 "생"의 마진을 제한 후 리셀러 마진을 지급하여야 한다.
- 7. "상"의 사업과 업무에 유·무형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(내부정보절취, 서버내부침입, 불법정보 게시 및 유포, 허위사실유포 등)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만약 관련 사실이 있을 경우 "생"은 법적인 책임의 부담을 지며, "상"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.
- 8. "생"은 "상"에게 "생"의 정보사항(상호변경, 대표자변경, 연락처, 주소, 휴업 및 폐업 여부 등)의 변동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
- 9. "생"에게 제공된 가맹점에게 "상"의 영업이미지로 영업을 진행함에 있어 성실하게 임하여야 한다.
- 10. "생"은 본 계약기간 동안 타 대리점, 리셀러 및 가맹점에게 "상"이 제공하는 서비스 등과 동일한 서비스 또는 "상"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저해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타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기로 한다.
- 11. "생"은 수수료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설정을 할 수 없다.
- 12. "생"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언론사와의 취재, 인터뷰, 사진 촬영 요청 등 외부에서 의뢰가 있을 경우 "상"과 협의하여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다.

#### 제6조 ["상"의 의무사항]

- 1. "상"은 관계 법령과 본 계약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
- 2. "상"은 "생"의 정보를 "생"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, 배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  - 1)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
  - 2)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
  - 3)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
- 3. "상"은 "생" 및 "생"의 리셀러가 영업한 가맹점이 타 대리점 및 타 대리점의 리셀러로 넘어가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는다.
- 4. "상"은 "생" 및 "생"의 리셀러가 영업한 가맹점이 안정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.
- 5. "상"은 "생"이 요청하는 개선사항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업그레이드를 하며, 최선의

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.

#### 제7조 [계약의 효력 및 변경]

- 1. 본 계약은 상호 동의 하에 작성날인한 시점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
- 2. 본 계약은 상호협의 하에 변경될 수 있으며, 부득이한 경우 "상"의 정책에 준거하여 계약의 세부사항이 변경될 수 있다.

#### 제8조 [계약기간]

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효력 발생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, 이후에는 협의 하에 계속 연장하기로 한다. 협의가 없을 시는 자동 연장된 것으로 한다.

#### 제9조 [계약의 중지]

- 1. "상"이 "생"에게 업무협력을 요청할 경우 "생"은 적극 협조를 하여야 하며, "상"이 3회에 걸쳐 협력 및 변경 또는 시정을 요청하였음에도 "생"이 해당 요청에 대하여 통보 없이 불이행할 경우에는 이를 이행할 시까지 본 계약을 중지할 수 있다.
- 2. "상"은 "생"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즉시 중지할 수 있다.
  - 1) "생"에게 "상"이 계약의 중지 통보 후 3개월 이상 변경 또는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
  - 2) "생"이 "상"에게 사전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연락이 두절되거나 거부할 경우
  - 3) 전시 사변,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및 우려가 있는 경우

#### 제10조 [계약의 해지]

- 1. "상"은 계약기간 내 계약해지 시 계약해지 2개월 전에 "생"에게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여 시정을 권고하고, 동일 사안에 대하여 2개월 이내에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- 2. "상"은 "생"의 다음과 같은 행위에 대하여 계약기간 내 즉시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.
  - 1) 관청 등으로부터 2회 이상 탈법행위로 제재를 받을 경우
  - 2) 2회 이상 "상"에게 시정요구를 통보 받고 시정조치가 되지 않을 경우
  - 3) "상"의 경쟁업체 상품을 홍보 및 판매할 경우
  - 4) "생"이 "생"의 리셀러 및 가맹점을 기망하는 행위가 접수되었을 경우
  - 5) "생"이 모집한 가맹점 중 불량매출로 인한 다발성 민원이 접수되었을 경우
- 3. "생"은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"상"의 영업이미지를 오프라인과 온라인상에서 철거 및 삭제하여야 한다. 계약기간 만료 2개월 후에도 "상"의 영업이미지를 사용할 경우 민·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.
- 4. 본조 2항으로 "상"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"상"은 "생"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 중 "상"이 손해를 입은 정도에 따라 일정금액을 제하고 지불할 수 있으며, "생"은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. (지급할 금액이 없을 경우 "생"은 일정금액을 "상"에게 배상하여야 한다.)

#### 제11조 [지적재산권의 보호]

1. "상"이 제작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"상"의 고유의 재산이며, 권한이다.

2. "생"은 본 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는 서비스에 대한 영업 목적으로 "상"의 저작물 및 지적재산권을 가공하여 사용할 수 있다. 단, "생"은 본 계약이 종료/해제/해지된 후에는 가공된 지적재산권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.

#### 제12조 [권리의 양도금지]

- 1. "생"은 본 계약에 약정상의 권리, 의무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.
- 2. "생"은 제3자에게 계약의 소유권을 매매 또는 증여를 할 수 없으며, 담보대상으로 사용할 수 없다. 이로 인하여 "상"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"생"이 배상하여야 한다.

#### 제13조 [분쟁해결 및 기타사항]

- 1. "상"은 "생"이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여 적절하고 빠른 시간 내 조치를 취한다.
- 2. "생"의 클레임 시 "상"은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"생"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한다.

#### 제14조 [분쟁의 사전처리]

- 1. "생"의 영업으로 인해 가입된 가맹점 매출이 불량매출인 경우 "상"은 "생"에게 기지급된 수수료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추후 정산 대금에서 해당 채권을 상계할 수 있으며, 고객 민원 처리와 관련 발생 예상되는 채권 및 제 비용의 보전을 위해 지급될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.
- 2. "생"은 "상"의 책임사유가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.
- 3. "생"은 "상"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상충하는 법령 또는 법규에 관계 없이 본 서비스 이용 또는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청구 또는 소송은 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, 이후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.

#### 제15조 [관할법원]

"상"과 "생"간에 업무협력으로부터 발생되거나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분쟁은 "상"의 소재지 법원을 합의에 의한 관할 법원으로 한다.

본 계약 체결을 보증하고 이를 상호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"상"과 "생"이 서명,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#### [별첨]

- 1. 대리점 가입조건, 서비스 공급조건, 수익모델 관련 부속 합의서
- 2. 하부업체 보증보험 대리 가입에 관한 부속 합의서
- 3. "생"의 사업자등록증 사본, 대표(자) 인감증명서 각 1부씩(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)

(이하 서명을 위한 여백)

# 2019년 월 일

# "չ}"

상 호 : (주)쏘다

사업자번호 : 277-81-01253

사업장주소 :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6길 61, 에이스하이엔드타워2차 1801호

대 표:장신호(인)

# "생"

상 호:

사업자번호 :

사업장주소 :

대 표:

# 대리점 가입조건, 서비스 공급조건, 수익모델 관련 부속 합의서

#### 1. 사이다페이 대리점 가입조건

● "상"은 "생"에게 서비스 대리점 코드를 무상으로 제공한다.

#### 2. 사이다페이 수수료 공급 및 수익조건 (부가세별도 기준)

- "상"은 사이다페이 공급수수료에 있어 "생"에게 일반사업자 기준으로
  - 1) 카드결제 2.5%, 2) 휴대폰결제 3.4%에 공급한다.
  - \* 결제수단별로 "생"에게 제공되는 공급수수료 원가 개념
  - \* 동 수수료 공급조건은 카드사, PG사, 본사 정책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- 수수료 지급 : 세금계산서 발행 후 익월 말일 지급
  - \* 사이다페이 가맹비가 있을 경우 상계 후 지급
- 상기 수수료 공급 조건 하에서 "생"에게 귀속되는 결제 수수료 마진 분배액은 다음과 같음

## 판매자 유형별 실질 공급수수료 개관

구분	공급수수료			대리점마진
। र	일반정산	익일정산(일반)	익일정산(배달)	네니ద이션
영세사업자	1 90%	1.7%	1 40%	
(3억미만)	1.2%	1.7%	1.4%	
중소1사업자	1.7%	2.2%	1.00%	
(3억~5억미만)		2.2%	1.9%	가맹점별
중소2사업자	1.8%	9.2%	2.0%	
(5억~10억미만)		2.3%		
중소3사업자	2.0%	0.50	2.2%	별도 설정
(10억~30억미만)		2.5%	2.290	
일반사업자	2.5%	3.0% 2.7%	9.70	2.7%
(30억이상)			2.1%	
개인판매자	3.7%	4.3%	無	
담보	가맹점담보	대리	점담보	

- \* 카드결제 기준이며, 여신관련법에 따라 향후 결제수수료가 조정될 수 있음
- \* 입금일 D+3일, 영세/중소 환급 D+5일
- \* 익일정산(배달)은 배달앱에 가입된 상점이 콜라서비스를 사용하는 조건에서만 가입가능

#### 3. 사이다페이 가맹비 적용조건 (부가세별도 기준)

- "생"의 리셀러 및 판매점 모집 과정에서 "생"의 전략적 선택에 따라 리셀러 가맹비, 판매점 가맹비 전체를 면제할 수 있음
- 다만, "생"의 선택으로 리셀러 또는 판매점에 대해 가맹비를 수수하는 경우 "상"에게 건당 15,000원을 납부해야 함 (동 본사 가맹비 지급액은 "생"에 대한 수수료 수익 분배액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정산될 수 있음)

### 4. 콜라서비스 설치비 및 월 관리비 배분조건 (부가세별도 기준)

- 월 관리비 마진은 "상"은 "생"이 유치한 콜라서비스 가맹점 중 월관리비의 수납이 완료된 가맹점수\*수금액의 60%를 "생"에게 지급한다.
- 수수료지급 : 세금계산서 발행 후 익월 말일 지급
- 설치비 및 월 관리비는 "상"의 프로모션정책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음

# 콜라서비스 설치비 및 월 이용료

구분	설치비(최초1회 발생) 월관리비	
기준가	30,000원	50,000원/월
대리점 수수료	전체	수금완료된 관리비의 60%

<sup>\*</sup> 프로모션 진행 기간 가입한 가맹점은 탈퇴시점까지 최초 가입한 요금제로 수납함

#### 하부업체 보증보험 대리 가입에 관한 부속 합의서

(이하 "생"이라 한다)와 (이하 "생"이라 한다)은/는 [사이다페이 서비스 통합이용계약서](이하 "사이다페이 이용계약"이라 한다.)에 명시된 "생"의 리셀러 및 판매점(이하 "하부업체"라 한다)에 대한 보증보험 적용의 면제 처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.

#### - 다음 -

- 1. 본 부속 합의는 "생"의 요청에 의해 "상"이 "생"의 "하부업체"의 보증보험을 면제함으로써 발행되는 사안에 대해 "상"과 "생"의 권리, 의무 및 책임한도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 2. "생"은 "하부업체"의 보증보험 면제를 위해 "생"의 보증보험을 증액하는데 합의한다. 증액될 보증보험 가입액은 "생"의 "하부업체" 중 매출상위 5개 업체의 최근월의 월매출 합으로 하여 매 1년마다 갱신하는 것으로 한다.
  - \* 보증보험 가입액 : [20,000,000] 원
- 3. 2항과 같이 "생"이 가입한 보증보험은 "생"의 "하부업체" 각각의 손책을 "생"이 대리하여 보증하는 것으로 간주한다.
- 4. "생"의 "하부업체"에서 "상"에 대한 손책이 발생한 경우 "상"은 "생"의 보증보험 책임한도 내에서 보증보험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.
- 5. "생"의 "하부업체"에서 보증보험의 책임한도를 초과하는 손책이 발생한 경우 "생"은 보증보험 책임한도 초과분에 해당하는 "상"의 손실에 대해 전액 보상하여야 한다. 이 경우 "상"은 본 항의 초과분을 근거로 하여 "생"에게 보증보험의 증액 또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, "생"은 "상"의 요구에 즉시 응해야 한다.
- 6. 5항의 합의사항은 "사이다페이 이용계약" 제8조 ["을"의 의무사항]에 대한 면책을 의미하지 않으며, 보증보험 책임이 "생"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"상"은 "생"과 "생"의 "하부업체"에 대해 다른 회원들과 동등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해야 한다.

#### 2019년 [●●]월 [●●]일

" <i>አ</i> }"	"생"
상호 : ㈜쏘다	상호 :
사업자번호 : 277-81-01253	사업자번호 :
사업장주소 :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	사업장주소 :
26길 61, 에이스하이엔드타워2차 1801호	대표 :
대표 : 장 신 호 (인)	